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나59860 판결 [공사대금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나59860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4가단141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변론종결 2024. 10. 17.

판결 선고 2024. 11. 14.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4가단1419 판결

주문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경 유한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이 동두천시 E 지상에서 시행한 근린생활시설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본 공사'라 한다)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3. 1. 10. F을 상대로 이 법원 2023가단201878호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23. 4. 19. 원고와 F 사이에 F이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이하 '관련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G은 F으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하도급 받아 이를 원고에게 재하도급 주었다. 원고는 2020. 4. 1.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시작하여 2020. 6. 25.까지 144,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으나 G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청사인 F이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취지로 관련사건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런데, F 역시 이 사건 본 공사의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사건 본 공사의 건축주는 피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144,000,000원 중 임금에 해당하는 78,000,000원을 제외한 6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본 공사의 건축주임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본 공사의 건축주는 주식회사 H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원고가 건축주를 상대로 직접 공사대금을 구하는 권원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어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더 나아가 다른 점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이민수

판사송승용

판사명재권